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7
----------	-----

2012년 6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2년 6월 2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임 옥 기)

가. 제안이유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마포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편익시설로서,
-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기관과의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설 개요

- 시설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마포구 월드컵 북로
44길 40(상암동)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4,708 m^2
- 주요시설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문화강좌 등
- 준공일자 : 2009. 12.



○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2.12.30~2015.12.29)
- 위탁업무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증진 등
-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
(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 및 마포구 예산 활용)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영 배)

가. 동의안 제출 배경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김연선 의원외 17인이 2011년 6월 15일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3월 29일자로 시행되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개정 경과>

- '11.06.15. : 김연선 의원 외 17인 개정조례안 발의
- '11.07.08.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1.07.29. : 서울시 재의요구
- '11.12.28. : 서울시 재의요구 철회
- '11.12.29. : 서울시 조례 공포/시행일 '12.3.29

- 기후환경본부 소관사무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는 11개가 있으며, 본 동의안과 같이 현재의 민간위탁 업체와 재계약¹⁾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1)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4곳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곳의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여 민간위탁하고 있고 노원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음.

<표 1>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분	양천	강남	노원	마포	
위치	목동 900번지	일원동 4-1번지	상계동 772번지	상암동 17-2	
부지면적	2,601㎡(787평)	6,408㎡(1,938평)	5,013㎡(1,513평)	1,524㎡(461평)	
건축연면적	3,921㎡(1,186평)	6,511㎡(1,970평)	7,143㎡(2,161평)	4,708㎡(1,424평)	
건설	기간	'94.12.30~'99.4.30	'94.12.30~'01.12	'94.12.30~'97.07.30	'07.12.24~'09.12.13
	사업비	8,112백만원	9,423백만원	9,361백만원	9,500백만원
운영	개관일	1999. 9. 1	2002. 1. 28	1998. 1. 22	2010.2.1
	운영사	(재)서울YMCA	(사)흥사단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체육청소년과 주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계약기간	'11.7.1~'14.6.30	'11.1. 28~'14.1.27	'10.02.01~'13.01.31	'09.12.30~'12.12.29
	프로그램	수영, 헬스, 에어로빅, 독서실	수영, 헬스, 독서실, 유아반	수영, 헬스, 유아교육, 청소년수련	사우나, 골프, 헬스, 독서실
주요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독서실, 휴게실 등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에어로빅실, 강당 등	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장, 대강당 놀이방, 컴퓨터실	사우나, 골프, 헬스, 독서실,	

- 마포주민편익시설은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지만 토지는 마포구 소유로서 2009.12.29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간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으로 인한 운영자체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나 마포구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음.
- 현재 민간위탁사업자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지를 가지고 있고, 마포구청에서 시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는 조건이라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기후환경본부 민간위탁 사무 현황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명	선 정 방 법	최 초 위탁일	위탁기간	2012년 예산액 (천원)
목동·노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예산지원형	시설	SH공사	계계약	'83.12.20	'06.2.1~ 협약해지 사유시	220,483,953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지원형	사무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수의계약	'11.9.30	'11.9.30 ~'13.12.31	1,090,000
강남자원회수시설	예산지원형	시설	한국시거스 (주)	공개입찰	'02.01.01	'11.1.1 ~ '13.12.31	3,290,000
노원자원회수시설	예산지원형	시설	한불에너지관리 (주)	공개입찰	'97.02.01	'09.2.1 ~ '12.1.31	3,392,000
뚝섬나눔장터 운영	예산지원형	사무	(재)아름다운 가게	공개입찰	'04.02.01	'12.1.1~ '13.12.31	150,000
마포자원회수시설	예산지원형	시설	한라산업개발 (주)	공개입찰	'06.06.01	'09.6.1 ~ '12.5.31	4,200,000
양천자원회수시설	예산지원형	시설	한국시거스 (주)	공개입찰	'96.03.01	'11.5.1 ~ '13.12.31	3,188,000
SR센터	예산지원형	시설	(사)재활용대 안기업연합회 (사)한국전자 사업환경협회	공개입찰	'09.10.16	'09.10.16~ 사회적기업 설립일	-
강남주민편익시설	수익창출형	시설	사단법인 흥사단	공개입찰	'02.01.28	'11.1.28 ~'14.1.27	-
마포주민편익시설	수익창출형	시설	마포구시설 관리공단	수의계약	'09.12.30	'09.12.30 ~'12.12.29	-
양천주민편익시설	수익창출형	시설	(재)서울 YMCA	공개입찰	'99.09.01	'11.7.1 ~ '14.6.30	-

[참고자료 2] 관련 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2항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나. 기타사항 : 시의회 동의 후 절차에 따라 추진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27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중인 편익시설로서
- 나.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이 없고 편익시설 운영시 부족한 예산은 타자치구에서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마포구에서 충당하여 지역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익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 위탁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마포구 월드컵 북로 44길 40(상암동)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 4,708㎡
- 주요시설 : 독서실, 헬스장, 사우나, 문화강좌 등
- 준공일자 : 2009. 12.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2.12.30 ~ 2015.12.29)
- 위탁업무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증진 등
-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 및 마포구 예산 활용)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12.30 ~ 2012.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라.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필요성

- 마포주민편익시설의 경우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나, 토지는 마포구 소유로서 2009.12.29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간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사업비 : 12,200백만원(마포구 토지매입비 2,600백만원 포함)
- 주변지역 여건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높게 평가 받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주민들의 이용료 할인 등 지역주민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마포구에 주민편익시설의 재계약 여부를 요청한 결과,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통해 주민편익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기 타

-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2.5.15)
- 마포주민편익시설 위탁관련 의견제출(마포구 청소행정과-4487, 2012.4.3)